

# 고시반 장학금 지급 내규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내규는 “장학금 지급 규정” 제16조(시행세칙 및 내규)에 의하여 고시반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고시반장학금에 관하여 본교의 “장학금 지급 규정”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따른다.

## 제2장 장학 기준 및 원칙

**제3조(장학 수혜대상)** 각 고시반별(사법고시반, 행정고시반, 국립외교원반, 기술고시반, 공인회계사반, 변리사반) 입반절차에 따라 선발되어 생활하는 학사학위과정 학생으로서 해당 고시반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는 경우 장학 수혜대상으로 한다.

**제4조(학비감면장학금)** ① 학비감면장학금은 국가고시(사법고시, 행정고시,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, 기술고시)를 준비하는 학생들만을 수혜대상으로 한다.

② 국가고시 1차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수업료의 50%를 학비감면장학금으로 지급한다.

③ 이때, 직전 학기 장학용 평점이 2.0 이상이어야 하며 1차 시험 합격년도에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휴학으로 인해 합격년도에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복학하는 최초학기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④ 1차 시험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을 소속 캠퍼스 장학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생활장학금)** ① 생활장학금은 국가고시 및 국가자격시험(사법고시, 행정고시,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, 기술고시, 공인회계사, 변리사)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고지서 감면 형식이 아닌 직접 지급 형식으로 수여한다.

② 생활장학금은 장학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매월 지급한다.

③ 각 고시반별 생활장학금 지급 인원은 매 학기마다 별도로 정한다.

**제6조(생활관장학금)** ① 생활관장학금은 국가고시 및 국가자격시험(사법고시, 행정고시,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, 기술고시, 공인회계사, 변리사)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고지서 감면 형식이 아닌 직접 지급 형식으로 수여한다.

② 생활관장학금은 생활관비로 6개월분 전액을 매학기 초에 지급한다.

③ 각 고시반별 생활관장학금 지급 인원은 매 학기마다 별도로 정한다.

## 제3장 장학금 지급 및 수혜 제한

**제7조(장학금 지급)** ① 각 고시반별 장학금은 배정된 최대인원과 장학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학비감면장학금은 고시 1차 합격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2차 및 최종 합격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.

③ 경비성으로 지급되는 생활장학금과 생활관장학금은 교내 장학금과 중복수혜를 허용한다.

**제8조(수혜자격 제한)*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 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졸업(유보)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
2. 일반대학원생 및 전문·특수대학원생
3. 징계 중인 자
4. 기타 장학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

**제9조(장학금 취소)** 기 선발 처리된 장학생이 제8조의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수혜 장학을 취소하고 취소 처리된 장학금은 전액 환수 조치한다.

## 제4장 기타

**제10조(기타)** 이 내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201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4조의 학비감면장학금은 2016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.

<참고> 각 고시반별 생활장학금 및 생활관장학금 배정인원 ('16.3.1~8.31)

(단위 : 명)

고시반 구분	생활장학금 배정인원	생활관장학금 배정인원
사법시험반	13	20
행정고시반	84	84
국립외교원반	8	8
기술고시반	45	65
공인회계사(CPA)반	47	78
변리사반	37	34
소 계	234	289